

② 개정 조문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60조(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) ① 영 제1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”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<u>기간</u>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 략) 2.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(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)이 평가한 <u>감정가액</u>이 있는 경우: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<p>3. <u>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있는 경우: 그 취득가격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60조(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간(이하 이 조에서 “평가기간”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감정가액</u>이 있는 경우(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) ----- 3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(증여 · 기부 · 그 밖의 무상취득 및 「소득세법」 제10조제1항 또는 「법인세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)-----</u> <u>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</u>